

시장 완전개방은 시기상조



孫京植
(한국화재해상보험(주) 사장)

1. 문제의 기본적 성격에 대한 고찰

11개 국내 손보사가 있는 국내 시장에는 근래에 와서 2개 외국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미·일·영 3개국의 보험회사가 국내사에 자본참여를 하고 있다.

국내사들의 수에 비하여 볼 때 외국사의 이러한 수는 우리 보험 시장이 이미 대폭 개방되어 있는 형편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보시장 개방문제가 또다시 거론된다고 함은, 외국인에게 보험사업 신규면 허를 더 많이 추가하여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가개방 요구는 지금 까지 정부가 신규면허를 엄격히 억제하여 온 정책을 외국인에 대해서는 완화하라는 말로서, 이는 확실히 외국인에게는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내국인에게는 개방되어 있는데 외국인에

게는 제한되어 있으니 외국인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말과는 다른 것이다.

설사 이러한 특혜론은 국제교역의 차원에서 이해를 구한다 치더라도 더 중요한 점은 외국인에 대한 개방이 신규면허 억제정책, 비꾸어 말하면 국내시장에서 보험사업자의 수를 제한해 온 정책을 일보 후퇴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보험사업은 국가경제와 국민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은 그 사업을 정부의 허가제로 하고 있음은 공통적 현상이다.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보험의 역사적 생성과정의 유래가 깊었던 영·미 등 서구제국과 그 영향권에 있었던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자유로 허가하는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밖의 나라들은 자유설립주의하의 보험회사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규모와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험회사의 수를 제한하는 엄격한 면허제한 정책을 취하여 오고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기왕에 폐단을 감수하면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한 이상 개방요구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자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새로운 개방이 그동안 정부가 공들여 이루어 놓은 보험사업의 안정기반을 해칠 소지가 큼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

2. 외국사의 국내시장 상륙후의 시장침식 전망

현재 국내에서 사업중인 2개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1.1%에 도달해 있다. 일견 크게 위협적인 수치가 아닌 것으로 이해될지도 모르겠으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39개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2.8%에 불과한 점을 비교할 때 국내시장에서의 외국사의 시장침식은 일본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중보험의 시대에 직면하여 외국사의 점유율 즉 국내시장 잠식도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신규면허가 더 허용될 때 가속화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사의 조직과 보유계약규모가 아직 취약하므로 상대적으로 신참외국사를 크게 압도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외국사의 국내참여를 더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3. 개방이 국내 손보산업에 미칠 영향

보험회사의 수는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된다고 한다. 회사의 수가 적으면 경쟁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수가 너무 많으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화의 위험이 따르며 영세규모로 인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실현이 어려워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고, 결국 이런 일들은 모두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귀착할 뿐더러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적정수가 유지됨이 이상적이다.

우리의 국내시장을 살펴 볼 때 1984년도 총손해보험료(보증보험 제외)는 7천9백92억원으로, 달러화로 환산할 때 9억6천6백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인근 일본의 21개사의 1사당 평균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협소한 시장에 이미 11개 국내사, 2개 외국사가 있는데 여기에 더 문호를 개방한다면 무리임은 자명한 것이다. 국내의 생명보험과 비교해 볼 때도 손보시장은 6개 생보사가 있는 생명보험시장의 1/3에 미치지 못하며 여기에 13개사가 일을 하고 있으니 이는 얼마나 협소한 시장에 여러 회사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개방은 보험회사 난립현상만 초래하고, 국내사의 취약성을 지속시키게 되며 이는 소비자나 국가경제에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규모의 영세성은 社當 보유계약 과소로 위험관리를 통한 보유증대를 어렵게 만들어 높은 출재의존도와 이에 따른 재보험료의 해외유출 방지를 중단시킬 수 없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언더라이팅·손해조정·보상서비스 등 보험기술의 발전이 지연되어 앞으로



더구나 국내의 외국사는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에 최근에 완전 개방되었다는 점과 지금까지는 주로 손보시장이 기업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 투융자와 관련된 기업보험, 계열그룹의 보험, 화재Pool 등에 외국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기업보험시장의 한계성과

규모의 불리와 함께 전문기술의 취약으로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더욱 지연시킬 것이다.

혹자는 개방으로 인한 선진기술의 도입 등 이점을 말하기도 하나, 이는 1차 개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결과가 이러한 주장의 허황됨을 잘 입증해 주고 있으므로 이점은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4. 개방에 대비한 대책

개방문제는 그 타당성의 시비야 어떻든, 문제의 진원이 보험 그 자체보다 선진국과의 교역관계에 있으므로 언젠가는 개방이 불가피한 국면에 이를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충격을 극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내시장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내사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추후 신규참여할지도 모를 외국사에 돌아갈 시장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시장을 속히 흡수해야 한다.

둘째, 보험의 판매조직을 시급히 육성하여 판매력에서 확고부동한 힘을 길러야 한다. 사실 외국사가 국내시장에 들어와서 국내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판매조직의 취약성이 큰 원인인 것이다.

셋째로는 보험에 대한 신뢰도, 특히 국내보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보험업계 스스로 서비스의 결함을 최대한 방지토록 해야겠지만, 사회 전체가 보험서비스를 바로 이해하고 국내회사를 아껴주는 풍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을 우리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험회사는 업무의 연구개발과 인력의 육성을 통한 경영체질의 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5. 끝맺는 말

지금까지 시장의 개방은 협소한 시장을 더욱 분할 함으로써 전전한 보험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 됨을 지적해 보았다. 우리는 간혹 앞으로 국제화시대가 되니 우리 보험산업도 하루 빨리 국제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후된 보험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담보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들어왔다. 그러나 정확히 국제기준에 의한 담보력평가를 해 볼 때 우리나라 손보사는 대부분 충실히 담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며, 문제는 시장의 규모가 아직 크지 못하다는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사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은 가능한 한 연기함이 옳은 일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보험의 기원

현존하는 보험약관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136년 로마시대의 것으로서 지금 로마역전의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포에니전쟁 때부터 칼리아원정에 이르는 2백여년 사이에 로마에는 수백만명의 전쟁포로가 잡혀와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죽으면 매장을 해주기로 하고 장례비용을 적립 했었다. 이 제도는 점차 갱신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하였는데 17개의 약관도 만들어졌다.

이 약관을 보면 오늘날의 보험약관과 유사한 점이 많은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할 때 100세스테르티(화폐단위)를 내고, 그 후 매년 15세스테르티만큼의 술(酒)을 낸다.
-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400세스테르티를 준다.
- 자살하더라도 준다.
- 일정기간 불입금이나 그 가격만큼의 술을 내지 않으면 계약은 실효가 된다.

그런데 보험료 대신 술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그것을 오늘날의 「부가보험료」(Loading)로 해석하고 있다.

100세스테르티는 제도운영의 간사가 수고의 대가로 마시거나, 또는 팔아서 그 자금을 제도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보험료의 체계가 이미 기원전부터 존재하였다 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비록 노예들에게서 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제도는 군인에게, 하급관리에게, 채석장의 노동자에게 번져갔으며 중세에 상인들이 재해나 도난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조합의 뿌리가 되었다.

런던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상보험증권(1547년 9월20일자)도 이태리어로 되어 있다.

한편 가장 오래된 성문헌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보험에 관한 조문이 있음을 들어 보험제도의 기원을 기원전 2000년 이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